

예산총칙

2015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84,363,584	20,530,908
일반회계		670,161,441	20,104,843
특별회계		14,202,143	426,064
기타특별회계		14,202,143	426,064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99,530	8,986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9,810,040	294,301
	수질개선 특별회계	71,035	2,131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868,996	26,070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658,021	19,741
	주차장 특별회계	2,389,912	71,697
	기반시설 특별회계	86,502	2,595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18,107	543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같다.

제 3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5,675,655천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4,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는 타 비목으로 이용할 수 없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2. 재해대책 및 복구비